

위치상표제도 소개

1. 위치상표의 의미

위치상표(Position Mark)라 함은 다소 생소한 개념이나 최근 대법원 판례(2010후2339 판결)에 의하면, 상표의 구성요소로서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그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이라고 판시한 바 있다.

부연하면, 상표의 전체적인 구성 중 그 형상표시가 그 형상에 내포되거나 결합된 표장의 사용위치를 설명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상표를 말한다. 현재 위치상표는 선진제국 중 미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서만 인정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위 대법원 판례에 의하여 최초로 인정되게 되었다.

2. 최근 대판(2012.12.20 선고 2010후2339 전원합의체 판결)의 입장

원심(특허법원 2010허364 판결)은 우측과 같이 독일 아디다스의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구성 중 일점쇄선으로 표시된 상의 형상은 지정상품인 스포츠셔츠의 일반적인 형상을 나타내는 것이고 좌우 세 개의 굵은 선 부분은 상품을 장식하기 위한 무늬의 하나 정도로 인식될 뿐이어서 식별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일점쇄선 부분은 출원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고 단지 좌우 세 개의 굵은 선이 지정상품의 옆구리에서 허리까지의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하는 위치상표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원심을 파기하고, 또한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여 형상표시로서 기술적 표장에 해당한다(2003후1987 판결 등)는 종래 대법원 판례를 일부 변경하였다.

3. 상표 사용자에게 상표선택범위 확대

위 대판에 의하여 위치상표를 인정함으로써 상표사용자에게 상표선택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향후 특히 의류, 신발, 가방이나 화장품 등에 이 위치상표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위치상표는 현행 상표법의 정의규정의 개정이나 권리불요구제도의 부활 없이도 상표의 설명서에 그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등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변리사 김 한 얼

상기 안내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사]
 특허법인 우린
 서울시 강남구 도곡로 133 (역삼동, 정호빌딩 3층)
 전화 : 02-565-2300
 팩스 : 02-565-7337
 Homepage : www.withpatent.com

[창원지사]
 특허법인 우린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156-7 1층
 전화 : 055-287-3399
 팩스 : 055-275-4644
 e-mail : intellim@kornet.net